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57
----------	------

2025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7., 허훈 의원(12명 찬성)
- 나. 회부일자 : 2025. 10. 23.
- 다.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5년 12월 2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만료 후 구성될 차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제11대 의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
-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와 의원 임기가 불일치되는 사항과 관련한 지침 조항이 없어 외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란이 예상됨
- 이에,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 임기도 자동 만료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 당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자동 만료 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1.(토)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임기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의원의 임기 만료 시 위원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지방재정 등 예산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임기 만료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후 시의원의 임기가 먼저 만료되는 경우, 비록 위원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해촉 절차 없이 위원 자격이 종료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 임기를 시의원 임기와 일치시키려는 것임.
- 시의원의 임기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 자동 만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 자격의 존속 여부, 예산정책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를 시의원 임기와 연동하여 자동 종료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아울러 예산정책위원회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정책위원회 및 홍보물 편집위원회¹⁾도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의 임기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임기 운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기)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17일
발의자: 허훈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원형, 이종환, 홍국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현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만료 후 구성될 차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제11대 의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
- 현행 조례에는 위원 임기와 의원 임기가 불일치되는 사항과 관련한 지침 조항이 없어 외부 위원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혼란이 예상됨
- 이에, 의원 임기 만료 시 위원 임기도 자동 만료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 당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를 자동 만료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생략) <u><신 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 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부 위원인 의원의 신분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으로서 임기도 자동 종료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